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19. 12. 30(월) 10:20

제2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도시환경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내역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19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이월사유
합 계 : 2개 부서 / 6건		3,502,517	2,137,803	
도시계획과 (2건/518,901천원)	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	600,000 [구 600,000]	286,850 [구 286,850]	[집행시기 미도래] '19. 3.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중 - 용역기간 : '19.6 ~ '20.11.
	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	516,517 [시 241,517] [구 275,000]	232,051 [시 12,881] [구 219,170]	[집행시기 미도래] '19. 2. 시 보조금 통보에 따라 '19. 3.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 중 - 용역기간 : '19.6. ~ '20.12.
공원녹지과 (4건/1,618,902천원)	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	1,450,000 [교 1,100,000] [구 350,000]	764,430 [교 764,430]	[집행시기 미도래] 특별교부세가 '19.10.4.일자에 교부되어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(용역기간 '19.11.12.~'20.2.9.) '20.3. 공사시행 예정
	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	36,000 [특 36,000]	5,216 [특 5,216]	[집행시기 미도래] 특별교부금이 '19.10.11.자에 교부되어 현재 설 계용역 추진 중 (용역기간 '19.11.13.~'20.3.11.) '20.4. 공사시행 예정
	공원 내 지능형 CCTV 설치	200,000 [교 200,000]	200,000 [교 200,000]	[집행시기 미도래] 특별교부세가 '19.9.10.일자에 교부되어 현재 현 장조사 및 설치 방향 논의 중으로, '20.3. 공사시행 예정
	호암산자락 방수설비 공원조성	700,000 [특 700,000]	649,256 [특 649,256]	[집행시기 미도래] 실시설계용역('19.10. ~ '20.1.) 수행 및 주민의견 수렴 후 공사발주 예정('20.1.)

3. 검토의견

-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부서 6건 21억 3,780만원으로
 - 도시계획과는
 -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총 2건 5억 1,890만원이 명시이월되며
해당 용역 사업이 추진 중이며 2020년도 집행완료 예정으로 이월
 - 공원녹지과는
 -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4건 16억 1,890만원이 명시이월되며
특별교부금의 하반기 지급으로 연도 내 집행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

-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 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
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19. 4. 17.] [법률 제15803호, 2018. 10. 16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
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
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
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
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
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
2011.8.4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
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
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
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
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
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
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